

서울특별시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(등기)

1.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(전용차로의 설치) 및 제160조 제3항(과태료)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와 관련입니다.

2. 무인카메라와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.

가. 위반기간 : `19.02.03 ~ `19.05.12

- 무인CCTV : `19.05.01 ~ `19.05.12

- PDA, 시민신고 등 : `19.03.21 ~ `19.05.12

나. 통보건수 : **황재균 등 4,439명**

다.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

구 분	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			
	계	무인CCTV	PDA+주행형	시민신고 등
금 회	4,439	4,194	81	164
전화 누계	46,170	44,583	535	1,052
누 계	50,609	48,777	616	1,216

라. 통보방법 :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

마.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: `19.05.16 ~ `19.06.05(20일간)

붙임: 사전통지 등기발송 내역 1부. 끝.

노미선 교통지도과 2019-06-07 11:57:33



서울특별시

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장팀장 김숙지 교통지도과장 05/17 代김숙자

협조자

시행 교통지도과-12079 () 접수 ()
우 /
전화 2133-4569 /전송 2133-4904 / / 부분공개(6)

노미선 교통지도과 2019-06-07 11:57:33